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04 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· 이용빈 ·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4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2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기금의 운용계획 등) ①	제42조(기금의 운용계획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	②
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	
결산서,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계	재무상태표
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	
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	
여야 한다.	<u>.</u>